

의안번호	제 33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7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34

제출연월일 : 2023년 7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유역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3조)
- 통합물관리 사업 및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안 제17조 및 제1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유역공동체의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물관리”란 수질개선, 수량확보 및 수생태계 등 유역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산·학 모두가 협력하여 실천하는 관리를 말한다.
2. “통합물관리 사업”이란 수질·생태복원, 수량 확보, 재해방지 및 친수·여가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유역공동체”란 미호강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호강 유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미호강 유역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통합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4. 통합물관리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통합물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6. 주민 참여와 민·관·산·학 협력의 확대 및 실천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산림국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및 미호강 유역 시·군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합물관리 분야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통합물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물관리 관련 기초자료 조사, 학술연구 및 시설공사 등 사업
2. 통합물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일상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모니터링 등 유지관리사업
4. 수질 오염원 발생 저감과 적정처리를 위한 오염원 정화·감시 등 환경보전 관련 사업
5. 유역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하천관리활동 전개 및 실천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 구성·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미호강 통합물관리 정책 및 사업발굴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있는 유역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비용 발생 요인

-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 수행기관의 지원 및 환경실태조사·연구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10조(회의의 운영)
- 안 제1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안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18조(전담기구의 설치)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종합계획 수립 : 10년 단위 계획
- 실태조사 : 유역 수자원 및 종합환경 기초조사
- 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 : 회의의 운영
-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소요금액
-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전담기구의 설치

나. 추계 결과: 목표연도 총 1조 1,832억원 정도(국비 6,345, 도비 1,442)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 김종식

##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183,256	130,682	209,156	296,906	293,306	253,206	
실태조사	300	-	-	100	100	100	
위원회 운영	24	-	6	6	6	6	
미호강 맑은물 사업	1,182,932	130,682	209,150	296,800	293,200	253,100	
재원조달	1,183,256	130,682	209,156	296,906	293,306	253,206	
보조금 (국비)	계	634,515	81,530	125,495	159,560	147,960	119,970
	계속사업	307,815	78,430	93,175	77,080	31,680	27,450
	신규사업	326,700	3,100	32,320	82,480	116,280	92,520
도 비	계	144,216	8,478	21,889	38,409	38,994	36,446
	계속사업	41,749	7,778	15,257	14,253	2,511	1,950
	신규사업	102,467	700	6,632	24,156	36,483	34,496
시군비	328,991	34,884	50,350	80,863	87,063	75,831	
기타 (기금, 자부담)	75,534	5,790	11,422	18,074	19,289	20,959	